

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

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(담당 : 김은영 간사)

제 목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청구

날 짜 2014. 9. 18. (총 1 쪽)

보도자료

참여연대,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법무부, 검찰청법 취지 왜곡하며 형식적인 인사 절차로 편법 운용 검사 사직 - 청와대 근무 - 검찰 복귀(신규임용)

- 1.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(소장 : 서보학,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형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 사실상 파견 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 오늘(18일) 오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 구서를 제출하였다.
- 2. 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명백히 금하고 있다.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법 취지이다. 하지만,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법무부는 '검사 사직 청와대 근무 검찰 복귀(신규임용)'라는 편법적인 방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.
 - 노무현 정부 때는 8명,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 종료 후 검찰에 복귀하였다.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년 6개월 사이에 이미 3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검찰에 복귀하였다.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실에는 5명의 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도 기존 공식대로 이후 검찰 복귀 가능성이 매우 크다.
- 3. 참여연대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 인사 사무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이며,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에 현저히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감사청구를 하였다. 끝. 별첨: 감사청구서